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5
----------	------

발의연월일 : 2016. 9. 2.

발의자 : 원혜영 · 정갑윤 · 도종환  
정인화 · 윤영일 · 안규백  
손혜원 · 윤후덕 · 이언주  
박주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4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청소년 초중고 학생의 수가 2,660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은 특성화학교 1개 및 대안교육시설 8개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할 때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학교들의 설립과정에서 학교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학교부지, 건물확보 등을 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용 부지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부 칙

i)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24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p>

기간은 개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  
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  
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  
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  
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  
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부·사용 또  
는 수익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  
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